

극보수주의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절실

# 성폭행 피해여성은 '일할 권리'도 없는가

## 태인여중 김교사 직위해제 파문 이후 제도적 보완작업 부각

성폭력 피해여성은 일할 권리도 없는가.

'성폭력은 수치'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시내버스나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 등 공공장소마저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어 그 요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태인여중 무용교사 김모(30)씨는 직장상사인 은모(50. 지난해 11월 자살) 교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해 온 사실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지 1년3개월만이었고, 교육부의 복직명령이 내려진 지 1년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김교사는 지난 4월 2일 출근하자마자 학생들의 등교거부를 유발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복직 2주만에 또 다시 직위해제 위기에 몰렸다. 공식승인을 거치지 않은 이사장측의 번복결정으로 5월 6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김교사의 원직복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그간 김교사의 무죄입증을 지원해 온 '김교사 성폭행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희, 성폭력에방치료센터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김교사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성추문 여교사로 호도하는 재단측과 학교측의 계획적인 중용이 있었다며 고발하고 나섰다.

김금옥 성폭력에방치료센터 총무는 "동료교사나 지역주민들은 의식적으로는 김교

사가 피해자이지만 '안 도와줘도 될 피해자'로 여기고, 가해자인 은교장이 자살해 더 이상 죄를 묻기 힘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감정적,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이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사회적 지탄은 이들을 또다른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소은희 정신과 원장은 "성폭력 피해는 극단적인 후유증을 낳아 공격적인 성생활을 하는가 하면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가족이나 교사, 경찰 등의 주변인이 침착하게 격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이나 애인들의 경우 피해여성의 충격을 이해하기보다 '부인이나 애인이 결백했다'는 사실을 입증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피해여성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원장은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피해자그룹 못지 않게 배우자모임이나 가족모임 등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침서를 만드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교사 성폭행사건 대책위는 현재 자료보내기, 편지쓰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한편 학교측, 자모회 등과 김교사의 거취문제를 숙의하고 있다. 또 교육청에는 관리상 책임을 물어 교원신분으로의 원

상회복을 전제로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도덕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성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성폭력특별법조차 '피

### 특별법 내 사용주 처벌조항 강화해야 가족-병원-경찰 지원체계 중요

성을 제는 이중적인 사회적 인식

해여성에게 직장은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

인터뷰 · 박숙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첫 여성장로

### "여성장로 · 목사 배출 밑거름 될 터"

### 피택장로 이후 5년만에, 당회서 결정권 가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여성 장로가 탄생했다. 서울안국동 안동교회의 박숙란(67) 장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박장로의 임직은 피택장로에서 5년이 걸렸다. 그 이유는 '여성은 안수 받을 수 없다'는 장로회의 법 때문이다. 이 법이 94년 노회에서 '여성도 안수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새로운 안수법에 의거해 첫 여성 장로가 탄생한 것이다.

감리교, 성결교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에게도 장로, 목사 안수를 해오고 있는데 반해 가장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교회의 모든 결정권이 장로와 목사의 모임인 당회가 중심이 되는 장로교회에서 여성

이 그 당회에 참석할 수 있고 동시에 노회와 교단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성이 교회내에서 주요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장로교에서 여성장로의 탄생은 하나의 혁명파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교회의 주요 결정이 남성위주의 일방적이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장로는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7년 동안 성실히 재직해 오고 교인의 3분의 2이상 함을 받아 노회 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직분이다.

"이번 여성 장로안수가 첫 관문이라는 데 의의가 큼니다. 60년 전부터 여성 신도

시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조실장은 특히 피해발생 24시간 전인 위기상황에서 증거채취와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병원 응급실과 경찰 공무원의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실장은 "치료조차 거부하는 응급실이 있는가 하면 성폭력을 적

시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거나 타 병원으로 미루는 병원이 적지 않다"면서 "귀찮은 일은 하기 싫다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인지 교사나 의사, 경찰들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의 경우 응급실마다 리스트를 배치해 즉각적인 응급치료와 증거채취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게 일할' 권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도사님들은 세례를 해 줄 수 없어 난감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염려를 하지 않게 되어 기쁩요."

나서서 일을 주도하기 보다 맡없이 곳은 일을 자처해온 박장로다. 교회일도 회장이나 대표의 역할보다 오히려 회계나 봉사부 일과 같은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일을 좋아했다고 주변사람들은 말한다. 그런 생활에 익숙한 탓인지 여성장로로서의 포부를 "그동안 하던 일을 뒤에서 계속하겠다"는 말로 대신한다.

"어렵게 여성 안수 제도가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여성 장로와 목사가 나와서 일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남성장로가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장로의 기대이자 소박한 바람이다.

(최진숙 기자)